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15일 강선우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는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 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 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장애아동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지자체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각각 대응하게 되는 등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체계적 처리나 관련 정보 연계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호조치 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의 연계·사용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특히, 「아동복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별도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참고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체계는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일시보호→ 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사례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지자체·경찰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간 협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먼저, 지자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도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안 제15조의3제1항)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서는 지자체장이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아동 중 보호조치 중인 아동 등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제1항),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지자체는 해당 근거 규정에 따라 매년 양육상황을 점검하였는데, 보호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양

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양육상황 점검 시 보호대상아동의 적응 상태, 변화 정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 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자립 생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게 됨.

한편,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아동복지법」상 양육상황 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적응상태, 변화 정도 등을 살펴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양육상황 점검도 병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반영하되, 현행법상 양육상황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점검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추가와 관련된 것임(안 제22조제6항제5호).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제6항),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추진 중에 있음. 참고로, 2025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예산액은 28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 예산으로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들 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아동학대정보 입력·관리 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것(안 제28조의2제2항 후단 신설)으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2023. 8. 8. 개정(2024. 2. 9. 시행)으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동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아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

이에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사례 판단, 사후관리 단계의 정보 등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통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의 연계 범위 검토, 시스템 개선 필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다음,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실태 및 평가결과’와 ‘장애아동학대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내

용과 관련된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

「아동복지법」 제6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항목별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않고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장애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특히,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 중 최소한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분석 등 아동 정책상 특성별 대응이 중요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나아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외에도 이주민,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행법상(제65조의2제4항)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내용별 대상아동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측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